



## 시설사업단 운영규정

제정일	2022. 6. 1
개정일	2023. 2. 1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시설사업단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시설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 이라 함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역할) 시설사업단은 교육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수익 확보 등을 위해 국제교류센터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발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대학발전의 기틀을 다진다.

제 3조 (사업) 시설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학 내 유희교지 및 유희교사에 수익창출을 위한 위탁관리 업무(국제교류센터 내의 골프장, 웨딩홀, 수영장 등의 임대 및 산학협약 등)
2. 국제교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숙사, 체육관, 대강당 등에 관한 자문 업무
3. 대학 내 민자유치(BTL, BTO 등)에 관한 업무
4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

[전문개정 2023. 2. 1]

제 4조 (조직 및 업무) ① 시설사업단에는 단장과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국제교류센터의 포괄적인 운영은 단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.

제 5조 (국제교류센터 운영 및 관리) ① 국제교류센터는 대학구성원(재학생 및 교직원)에게 최우선의 사용권한이 주어지며 승인되지 않은 외부인은 관리과의 협조 하에 철저히 통제한다.

② 국제교류센터내의 기숙사는 학산관에서 운영 관리하되 시설사업단에서 지원한다.

③ 국제교류센터의 시설 중 산학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, 산업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교육, 문화, 체육 및 복지공간 등을 공동으로 연구 및 개발하고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(개정 2023. 2. 1)

④ 본 규정 이외의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관리과를 주무부서로 한다. (개정 2023. 2. 1)

[제목개정 2023. 2. 1]

제 6조 (운영위원회) ① 시설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시설사업단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

제 7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설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